

2023 Final 세무회계(16판 1쇄, 주민규제) 추록(5월 9일)

2023. 4. 11.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령으로 종전 내용이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.

저자드림

[2023.4.11.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사항]

1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를 한시적 상향

2023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40%에서 80%로 한시적으로 상향됨.

2.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조정

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.1.1.부터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됨. (종전 : 2025.1.1.부터)

3.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(2023.5.12.부터 시행)

거주자가 전용계좌(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로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)를 통하여 2024. 12. 31. 까지 국채법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%의 세율을 적용하고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.

4.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(분리과세) 신설(2023.6.12.부터 시행)

- ① 거주자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2024.12. 31.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.
- ② 거주자가 각 금융회사를 통하여 가입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①을 적용하지 아니함
-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,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①을 적용하지 아니함.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			
I - 44	③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(본인 부담액) : 4,000,000원	③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(본인 부담액) : 3,850,000 원				
I - 46	①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액 : 2,400,000원	①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액 : 2,000,000 원				
II - 54	40% 공제율 적용대상	40%(80%) 공제율 적용대상				
	2. 종합소득공제액 22,150,000	2. 종합소득공제액 22,300,000				
해설편 / 40	상13행부터 다음과 같이 대체하세요.					
	(4) 특별 소득 공제 : (보험료공제: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)	3,850,000				
	(5)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*	4,500,000				
		<u>22,150,000</u>				
	*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: Min [5,150,000 , (한도) 4,500,000] = 4,500,000					
	구분	사용금액	최저사용금액	초과사용액	공제율	소득공제액
	대중교통	2,000,000		2,000,000	80%	1,600,000
	전통시장	4,000,000		4,000,000	40%	1,600,000
	직불카드등	3,000,000 ^{*2)}		3,000,000	30%	900,000
	신용카드	39,500,000 ^{*1)}		7,000,000	15%	1,050,000
합 계	48,500,000	130,000,000 × 25% = 32,500,000	16,000,000		5,150,000	
	*1) 45,000,000 - 4,000,000(전통시장) - 1,500,000(보험료) = 39,500,000					
	*2) 5,000,000 - 2,000,000(대중교통) = 3,000,000					
	※ 한도액 : 250만원(기본한도) + Min [515 만원 - 250만원 = 265 만원, 200만원 × 80% + 400만원 × 40% = 320 만원(한도 200만원)] = 4,500,000					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-----	------	------

상4행부터 다음과 같이 대체하세요.

- (3) 연금보험료공제 : **2,000,000**
- (4) 특별소득공제 : (보험료 공제) 1,200,000 + 100,000 + 200,000 = 1,500,000
- (5)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* **6,000,000**
- 20,000,000

*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: $\text{Min} [6,800,000, (\text{한도}) 6,000,000] = 6,000,000$

구분	사용금액	최저사용금액	초과사용액	공제율	소득공제액
대중교통	3,000,000		3,000,000	80%	2,400,000
전통시장	5,000,000		5,000,000	40%	2,000,000
도서·신문 등	1,000,000		1,000,000	30%	300,000
직불카드등	6,000,000 ^{*1)}		6,000,000	30%	1,800,000
신용카드	18,250,000 ^{*2)}		2,000,000	15%	300,000
합계	33,250,000	$65,000,000 \times 25\% = 16,250,000$	17,000,000		6,800,000

*1) $15,000,000 - 5,000,000(\text{전통시장}) - 3,000,000(\text{대중교통}) - 1,000,000(\text{공연 관람비}) = 6,000,000$

*2) $25,000,000 - 6,000,000 \times (1 - 10\%) - 1,350,000(\text{면세점 물품}) = 18,250,000$

※ 한도액 : $3,000,000 + \text{Min} [3,800,000, 3,000,000 \times 80\% + 5,000,000 \times 40\% + 1,000,000 \times 30\%] = 4,700,000(\text{한도 } 3,000,000) = 6,000,000$

해설편 / 74	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	4,300,000	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	4,500,000
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상2행부터 다음과 같이 대체하세요.

3.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 : $\text{Min} [(1), (2)] = 4,500,000$

(1) 소득공제액

구분	사용금액	최저 사용금액	초과 사용액	공제율	소득공제액
대 중 교 통	1,500,000		1,500,000	80%	1,200,000
전 통 시 장	3,000,000		3,000,000	40%	1,200,000
직 불 카 드 등				30%	
신 용 카 드	40,000,000		19,500,000	15%	2,925,000
합계	44,500,000	$82,000,000 \times 25\% = 20,500,000$	24,000,000		5,325,000

(2) 한도액 : ① + ② = **4,500,000**

① 기본한도 : 2,500,000(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)

② 추가한도 : $\text{Min} [(가), (나)] = 2,000,000$

(가) $5,325,000 - 2,500,000 = 2,825,000$

(나) $1,200,000 + 1,200,000 = 2,400,000(\text{한도 : } 2,000,000)$

페이지	수정 전		수정 후	
해설편 / 92	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	2,770,000	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	2,890,000

상1행부터 다음과 같이 대체하세요.

3.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 : **2,890,000**

(1) 소득공제액

구 분	사용금액	최저 사용금액	초과 사용액	공제율	소득공제액
대 중 교 통	300,000		300,000	80%	240,000
전 통 시 장	4,000,000		4,000,000	40%	1,600,000
직 불 카 드 등	-		-	30%	-
신 용 카 드	27,000,000*		7,000,000	15%	1,050,000
합 계	31,300,000	$80,000,000 \times 25\% = 20,000,000$	11,300,000		2,890,000

* $5,000,000 + 4,000,000 + 15,300,000 - 3,000,000(\text{국의 사용}) - 300,000(\text{대중교통}) + 10,000,000 - 4,000,000(\text{전통시장}) = 27,000,000$

(2) 한도액 : ① + ② = **2,890,000**

① 기본한도 : 2,500,000(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)

② 추가한도 : $\text{Min}[(가), (나)] = \mathbf{390,000}$

(가) $\mathbf{2,890,000} - 2,500,000 = \mathbf{390,000}$

(나) $300,000 \times \mathbf{80\%}(\text{대중교통}) + 4,000,000 \times 40\%(\text{전통시장}) = \mathbf{1,840,000}(\text{한도 : 200만원})$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다음과 같이 대체하세요. 상11행 ~ 16행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 rowspan="3">신용카드 등 사용금액</td> <td>40%(80%)공제율 적용대상</td> <td>1,700,000</td> </tr> <tr> <td>30%공제율 적용대상</td> <td>—</td> </tr> <tr> <td>15%공제율 적용대상</td> <td>19,900,000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</td> <td>720,000</td> </tr> </table> <p>1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① 40%(80%)공제율 적용대상 : 1,500,000 + 200,000 = 1,700,000</p>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40%(80%)공제율 적용대상	1,700,000	30%공제율 적용대상	—	15%공제율 적용대상	19,900,000	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		7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40%(80%)공제율 적용대상		1,7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0%공제율 적용대상	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5%공제율 적용대상	19,9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		7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해설편 / 112	<p>상19행 ~ 26행</p> <p>2.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 : 720,000</p> <p>(1) 소득공제액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사용금액</th> <th>최저 사용금액</th> <th>초과 사용액</th> <th>공제율</th> <th>소득공제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 중 교 통</td> <td>200,000</td> <td></td> <td>200,000</td> <td>80%</td> <td>160,000</td> </tr> <tr> <td>전 통 시 장</td> <td>1,500,000</td> <td></td> <td>1,400,000</td> <td>40%</td> <td>560,000</td> </tr> <tr> <td>직 불 카 드 등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3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신 용 카 드</td> <td>19,900,000</td> <td></td> <td>—</td> <td>15%</td> <td>—</td> </tr> <tr> <td>합 계</td> <td>21,600,000</td> <td>80,000,000 × 25% = 20,000,000</td> <td>1,600,000</td> <td></td> <td>72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사용금액	최저 사용금액	초과 사용액	공제율	소득공제액	대 중 교 통	200,000		200,000	80%	160,000	전 통 시 장	1,500,000		1,400,000	40%	560,000	직 불 카 드 등				30%		신 용 카 드	19,900,000		—	15%	—	합 계	21,600,000	80,000,000 × 25% = 20,000,000	1,600,000		720,000	
구 분	사용금액	최저 사용금액	초과 사용액	공제율	소득공제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 중 교 통	200,000		200,000	80%	1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 통 시 장	1,500,000		1,400,000	40%	5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 불 카 드 등			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 용 카 드	19,900,000		—	15%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21,600,000	80,000,000 × 25% = 20,000,000	1,600,000		7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해설편 / 113	③ 장인의 대중교통 이용액 : 40%공제율 적용대상	③ 장인의 대중교통 이용액 : 40%(2023년은 80%)공제율 적용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해설편 / 125	<p>③ 금융재산상속공제 : Min[1,380,000,000* × 20% = 276,000,000, 2억원] = 200,000,000</p> <p>* 400,000,000(생명보험금) + 800,000,000(예금) + 180,000,000(주식) = 1,380,000,000</p>	<p>③ 금융재산상속공제 : Min[1,200,000,000* × 20% = 240,000,000, 2억원] = 200,000,000</p> <p>* 400,000,000(생명보험금) + 800,000,000(예금) = 1,200,000,000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해설편 / 214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</td> <td>4,600,000</td> </tr> </table>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	4,600,000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</td> <td>5,200,000</td> </tr> </table>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	5,2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	4,6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	5,2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-----	------	------

다음과 같이 대체하세요.

상1행 ~ 9행

4.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(1), (2)] = 5,200,000$

(1) 소득공제액

구 분	사용금액	최저 사용금액	초과사용액	공제율	소득공제액
대 중 교 통	1,500,000 ^{*1)}		1,500,000	80%	1,200,000
전 통 시 장	2,500,000		2,500,000	40%	1,000,000
도 서 공 연 등	-			30%	
직 불 카 드 등	12,000,000 ^{*2)}		11,700,000	30%	3,510,000
신 용 카 드	9,700,000 ^{*3)}		-	15%	-
합 계	25,700,000	40,000,000 × 25%	15,700,000		5,710,000

해설편
/ 215

상13행 ~ 18행

(2) 한도액 : ① + ② = 5,200,000

① 기본한도 : 3,000,000(충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)

② 추가한도 : $\text{Min}[(가), (나)] = 2,200,000$

(가) $5,710,000 - 3,000,000 = 2,710,000$

(나) $1,500,000 \times 80\% + 2,500,000 \times 40\% = 2,200,000$ (300만원 한도)

※ 종합한도대상 : $1,200,000 + 960,000 + 5,200,000 = 7,360,000 \rightarrow$ 한도 2,500만원 이내 금액

다음과 같이 대체하세요.

상16행 ~ 19행

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	⑦ 1,728,000
	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	₩0
	종합소득 과세표준	60,442,000
	산출세액	8,746,080

해설편
/ 265

하9행

	결정세액	⑫ 4,211,080
--	------	-------------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-----	------	------

상1행부터 다음과 같이 대체하세요.

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: $\text{Min}[(가), (나)] = 1,728,000$

(가) 소득공제액

해설편 / 266

구 분	사용금액	최저 사용금액	초과 사용액	공제율	소득공제액
대 중 교 통	210,000		210,000	80%	168,000
전 통 시 장	2,700,000		2,700,000	40%	1,080,000
직 불 카 드 등	2,500,000*		1,600,000	30%	480,000
신 용 카 드	21,000,000		—	15%	
합 계	26,410,000	$87,600,000 \times 25\%$ $= 21,900,000$	4,510,000		1,728,000

⑫ 결정세액 : 8,766,240(산출세액) - 4,535,000(세액 공제 합계) = 4,231,240

⑫ 결정세액 : **8,746,080**(산출세액) - 4,535,000(세액 공제 합계) = **4,211,080**

상6행부터 다음과 같이 대체하세요.

(물음 4)

(1) 기본한도내 공제액	(2) 추가공제액	(3)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합(1 + 2)
2,500,000	2,000,000	4,500,000

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(1), (2)] = 4,500,000$

(1) 소득공제액

해설편 / 273

구 분	사용금액	최저 사용금액	초과 사용액	공제율	소득공제액
대 중 교 통	600,000		600,000	80%	480,000
전 통 시 장	4,200,000		4,200,000	40%	1,680,000
직 불 카 드 등	5,900,000*		5,900,000	30%	1,770,000
신 용 카 드	28,300,000		7,800,000	15%	1,170,000
합 계	39,000,000	$82,000,000 \times 25\%$ $= 20,500,000$	18,500,000		5,100,000

* 4,900,000 + 1,000,000 = 5,900,000

(2) 한도액 : ① + ② = 4,500,000

① 기본 : 2,500,000(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)

② 추가 : $\text{Min} \left[\begin{array}{l} 5,100,000 - 2,500,000 = 2,600,000 \\ 600,000 \times 80\% + 4,200,000 \times 40\% = 2,160,000(200만원 한도) \end{array} \right] = 2,000,000$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해설편 / 273	<p>하10행부터 다음과 같이 대체하세요.</p> <p>(물음 5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1) 과세표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2) 산출세액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1,780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,667,200</td> </tr> </table>		(1) 과세표준	(2) 산출세액	51,780,000	6,667,2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1) 과세표준	(2) 산출세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1,780,000	6,667,2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근로소득금액</td> <td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right;">71,000,000</td> <td style="width: 40%;"></td> </tr> <tr> <td>(-) 소득공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,220,000*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과세표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51,780,0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×) 세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기본세율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산출세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6,667,2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: 6,240,000 + (51,780,000 - 50,000,000) × 24%</td> </tr> </table> <p>* 9,500,000(인적공제) + 1,500,000(보험료공제) + 3,000,000(연금보험료공제) + 4,500,000(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) = 19,220,000</p>		근로소득금액	71,000,000		(-) 소득공제	19,220,000*		과세표준	51,780,000		(×) 세율	기본세율		산출세액	6,667,200	: 6,240,000 + (51,780,000 - 50,000,000) × 2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로소득금액	71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-) 소득공제	19,220,000*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51,78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×) 세율	기본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출세액	6,667,200	: 6,240,000 + (51,780,000 - 50,000,000) × 2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해설편 / 377	<p>위10행부터 다음과 같이 대체하세요.</p> <p>1. 소득공제액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사용금액</th> <th>최저 사용금액</th> <th>초과사용액</th> <th>공제율</th> <th>소득공제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중교통</td> <td>1,600,000</td> <td></td> <td>1,600,000</td> <td>80%</td> <td>1,280,000</td> </tr> <tr> <td>전통시장</td> <td>6,500,000</td> <td></td> <td>6,500,000</td> <td>40%</td> <td>2,600,000</td> </tr> <tr> <td>도서, 신문 등</td> <td>—</td> <td></td> <td>—</td> <td>30%</td> <td>—</td> </tr> <tr> <td>직불카드 등</td> <td>7,000,000^{*1)}</td> <td></td> <td>7,000,000</td> <td>30%</td> <td>2,100,000</td> </tr> <tr> <td>신용카드</td> <td>20,000,000^{*2)}</td> <td></td> <td>5,000,000</td> <td>15%</td> <td>750,000</td> </tr> <tr> <td>합계</td> <td>35,100,000</td> <td>60,000,000 × 25%</td> <td>20,100,000</td> <td></td> <td>6,73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사용금액	최저 사용금액	초과사용액	공제율	소득공제액	대중교통	1,600,000		1,600,000	80%	1,280,000	전통시장	6,500,000		6,500,000	40%	2,600,000	도서, 신문 등	—		—	30%	—	직불카드 등	7,000,000 ^{*1)}		7,000,000	30%	2,100,000	신용카드	20,000,000 ^{*2)}		5,000,000	15%	750,000	합계	35,100,000	60,000,000 × 25%	20,100,000		6,730,000
	구분	사용금액	최저 사용금액	초과사용액	공제율	소득공제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중교통	1,600,000		1,600,000	80%	1,28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통시장	6,500,000		6,500,000	40%	2,6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도서, 신문 등	—		—	30%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불카드 등	7,000,000 ^{*1)}		7,000,000	30%	2,1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용카드	20,000,000 ^{*2)}		5,000,000	15%	75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계	35,100,000	60,000,000 × 25%	20,100,000		6,73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② 추가한도 : Min[㉔, ㉕] = 3,000,000</p> <p>㉔ 6,090,000 - 3,000,000 = 3,090,000</p> <p>㉕ 6,500,000 × 40% + 1,600,000 × 40% = 3,240,000</p> <p>→ (한도) 3,000,000</p>		<p>② 추가한도 : Min[㉔, ㉕] = 3,000,000</p> <p>㉔ 6,730,000 - 3,000,000 = 3,730,000</p> <p>㉕ 1,600,000 × 80% + 6,500,000 × 40% = 3,880,000</p> <p>→ (한도) 3,000,000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페이지	수정 전		수정 후	
	종합소득공제액	14,500,000	종합소득공제액	15,300,000

상16행부터 다음과 같이 대체하세요.

- ④ 신용카드등 사용금액*¹⁾ : **5,800,000**
 ⑤ 소득 공 제 합 계*²⁾ **15,300,000**

*1)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: **5,800,000**

구 분	사용금액	최저 사용금액	초과사용액	공제율	소득공제액
대 중 교 통	2,000,000		2,000,000	80%	1,600,000
전 통 시 장	3,000,000		3,000,000	40%	1,200,000
도 서 · 신 문 등				30%	
직 불 카 드 등				30%	
신 용 카 드	40,000,000*		23,475,000	15%	3,521,250
합 계	45,000,000	66,100,000 × 25% = 16,525,000	28,475,000		6,321,250

* 25,000,000 - 3,000,000 + 20,000,000 - 2,000,000 = 40,000,000

※ 한도액(① + ②) : **5,800,000**

① 기본한도 : 3,000,000(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)

② 추가한도 : Min [③, ④] = **2,800,000**

③ **6,321,250 - 3,000,000 = 3,321,250**

④ $2,000,000 \times 80\% + 3,000,000 \times 40\% = 2,800,000$ (한도 : 3,000,000)

*2) 종합한도대상 : **5,800,000**(신용카드 등 사용액) → 한도 2,500만원 이내 금액

해설편 / 403	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	5,390,000	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	6,000,000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다음과 같이 대체하세요.

상8행 ~ 15행

- (4) 신용카드사용공제 : **6,000,000**

구 분	사용금액	최저사용금액	초과사용액	공제율	소득공제액
대 중 교 통	2,000,000		2,000,000	80%	1,600,000
전 통 시 장	3,000,000		3,000,000	40%	1,200,000
도 서 신 문 등	3,000,000* ¹⁾		3,000,000	30%	900,000
직 불 카 드 등	5,500,000* ²⁾		5,500,000	30%	1,650,000
신 용 카 드	15,600,000* ³⁾		5,600,000	15%	840,000
합 계	29,100,000	40,000,000 × 25% = 10,000,000	19,100,000		6,190,000

상19행 ~ 21행

※ 한도액(① + ②) : **6,000,000**

① 기본한도 : 3,000,000(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)

② 추가한도 : Min [**3,190,000**, $1,600,000 + 1,200,000 + 900,000 = 3,700,000$ (한도 300만원)] = **3,000,000**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
해설편 / 407	다음과 같이 대체하세요.		
	하11행		
	①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9,600,000	②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344,736	
	③ 익금불산입액 9,255,264		
해설편 / 407	하9행		
	2.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: $43,800,000^{*2)} \times \frac{359.1\text{억원}^{*3)}}{100\text{억원} \times 365} \times 80\% = 344,736$		
	하1행		
	*3) $2.1\text{억원} \times 151\text{일}(1. 1. \sim 5. 31.) + 2.1\text{억} \times \frac{10,000\text{주}}{15,000\text{주}} \times 30\text{일}(6. 1. \sim 6. 30.) = 359.1\text{억원}$		
해설편 / 448	4.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,500,000	4.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4,500,000	
	상8행부터 다음과 같이 대체하세요.		
	2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: 4,500,000		
	구 분	사용금액	최저사용금액
	대중교통	3,000,000	초과사용액
	전통시장	2,000,000	공제율
	직불카드등	3,000,000 ^{*2)}	소득공제액
	신용카드	79,000,000 ^{*1)}	3,000,000
	합 계	87,000,000	300,000,000 × 25% = 75,000,000
			12,000,000
		4,700,000	
*1) $104,000,000 - 22,000,000 - 3,000,000 = 79,000,000$			
*2) $8,000,000 - 2,000,000 - 3,000,000 = 3,000,000$			
※ 한도액(① + ②) : 4,500,000			
① 기본한도 : 2,500,000(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)			
② 추가한도 : $\text{Min} [2,200,000(\text{기본한도 초과액}), 3,000,000 \times 80\% + 2,000,000 \times 40\% = 3,200,000(200\text{만원 한도})] = 2,000,000$			